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09 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 백승아·박홍배·송옥주

박홍근 · 김용민 · 박지원

박해철 · 김남희 · 김남근

복기왕・김성환・조 국

정진욱 · 모경종 · 문정복

서미화 · 김준혁 · 임미애

허 영·오세희·김 윤

김한규 · 양부남 · 서영교

이기헌 • 정준호 • 이해식

민형배 • 김 현 • 이재강

강준현 • 손명수 • 정일영

박지혜 • 박민규 • 김문수

박성준 · 김민석 · 추미애

진선미 • 김영호 • 정을호

고민정 • 이수진 • 황명선

문금주 · 노종면 · 송재봉

윤종군 • 박선원 • 안태준

의원(5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

고 있으며,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특히,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. 또한,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,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 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,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,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,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 10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4(교육활동 등의 보호 관련 안내)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그 지원 업무 수행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  - 1. 이 법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등 교육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
  - 2. 제3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10(학교 민원의 처리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
  - 2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

템을 구축

- 3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
- 4. 그 밖에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
- ② 교육감은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0조의4(교육활동 등의 보호
	관련 안내) 학교의 장은 교직
	원의 교육활동 및 그 지원 업
	무 수행과 학습권을 보호하기
	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 및
	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
	을 안내하여야 한다.
	1. 이 법, 「학교폭력예방 및
	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
	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
	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등 교
	육관계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
	과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
	및 위반 시 조치사항
	2. 제3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
	른 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
	에 관한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제30조의10(학교 민원의 처리) ①
	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
	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
	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
	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

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 차 마런
- 2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

   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

   정보시스템을 구축
- 3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 런
- 4. 그 밖에 학교 민원 처리를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
- ② 교육감은 학교 민원을 처리 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